

# 안산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. 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여성복지회관의 강사를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를 통하여 여성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저소득 및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사용(수강)료 면제외에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 또는 장애여성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조제2항 신설).
- 나. 강사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(안 제12조).
- 다. 여성복지회관 사용료중 현재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'전시실'의 사용료 기준을 삭제함 (안 별표).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□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 □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#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# □ 예산수반사항 : 4,000천원(연)

- $100,000\text{원} \times 20\text{명} \times 2\text{회} = 4,000\text{천원}$

#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3. 10. 10. ~ 2003. 10. 30(20일간)

### 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# 안산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“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”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2조 (강사) ①복지회관에서 교육하는 과목의 강사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 다만,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〈별표〉 “복지회관 수가 기준표”의 1.기본시설 사용료 및 2.냉,난방 사용료중 구분란 “전시실(강의실)” 및 비고란 “(다만, 전시회는 제외)”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여성복지회관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여성복지회관장 최 익 용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관리담당 정 시 영
	담당자 성명·전화	강 경 호 (행정 2761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9조 (사용료 등의 면제) (본문 생략)</p> <p>1. (생 략) 2.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3. ~ 5. (생 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<p>제12조 (강사) ①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 (사용료 등의 면제) ① (현행 본문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 (강사) ①복지회관에서 교육하는 과목의 강사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한다. 다만,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〈별 표〉</p> <p>복지회관 수가 기준표(제6조 관련)</p> <p>1. 기본시설 사용료</p>	<p>〈별 표〉</p> <p>복지회관 수가 기준표(제6조 관련)</p> <p>1. 기본시설 사용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사용목적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기본단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기본요액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대강당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공연, 발표, 교육행사등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시간내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50,000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전시실 (김의실)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전시회, 회의, 교육등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1회(1일)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30,000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기준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(다만, 전시회는 제외)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사용목적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고	대강당	공연, 발표, 교육행사등	2시간내	50,000원	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	전시실 (김의실)	전시회, 회의, 교육등	1회(1일)	30,000원	기준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(다만, 전시회는 제외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사용목적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기본단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기본요액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 padding: 2px;">비고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대강당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공연, 발표, 교육행사등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시간내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50,000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〈삭 제〉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기준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 〈삭 제〉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사용목적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고	대강당	공연, 발표, 교육행사등	2시간내	50,000원	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		〈삭 제〉			기준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 〈삭 제〉
구 분	사용목적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강당	공연, 발표, 교육행사등	2시간내	50,000원	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시실 (김의실)	전시회, 회의, 교육등	1회(1일)	30,000원	기준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(다만, 전시회는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사용목적	기본단위	기본요액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강당	공연, 발표, 교육행사등	2시간내	50,000원	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
	〈삭 제〉			기준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 〈삭 제〉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2. 냉, 난방 사용료				2. 냉, 난방 사용료			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	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대강당	1회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 과시 매시간 기본요액의 20%가산 <u>다만, 전시회 는 제외</u>	대강당	1회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 과시 매시간 기본요액의 20%가산 <u>〈삭 제〉</u>
전시실 (강의실)	1회(1일)	<u>30,000원</u>			<u>〈삭 제〉</u>		

# 안산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191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3. 12. 6.  
제 안 자 : 경제사회위원회

## 1. 수 정 이 유

- 강사를 공개모집하여 채용하는 경우 투명성을 제고하고 능력 있는 강사가 선발되어 교육원생들에게 질 좋은 강의 및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평가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

## 2. 주 요 골 자

-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  
(안 제12조)

##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# 신 구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2조(강사)①(생략)  <u>〈신설〉</u>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2조(강사)①(원안과 같음)  <u>②</u>관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 모집을 할 때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         ③(원안 제2항과 같음)</p>